의안번호	제303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4월 일 (제308회)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2년 4월 6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3

제출연월일 : 2012년 4월 6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행정용어 순화 및 금지 규정 완화와 중복 문구 등의 정리로 긍정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며,

○ 「시험종별에 따른 처리기간과 검체소요량」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여 전문적인 시험·검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1 행정용어 순화

○ “단속” → “점검”으로 개정 (안 제5조제1호)

○ “지도·단속” → “지도·점검”으로 개정 (안 제5조제3호)

2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규정 완화 (안 제8조)

변 경 전	변 경 후
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·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	① 시험결과에 대하여 광고 또는 표시할 경우 **시험성적서 전문(全文)을 기재** ②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**변경하여 기재하거나** “정부보증”, “검정완료” 등 **유사문구 기재 불가**

3 법인인 경우 포함 표기 (안 제9조)

- 성명 →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

4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변경 (별표)

① 단위 통일(표준화) : ℓ → L / cc, mℓ → mL / M → m

- 국제단위계 기준 약호로 통일

② 문구 삭제

- 먹는물(샘물)검사 처리기간 중 **“여니시아균검사28일”** 문구 삭제

▸ 12일(여니시아균검사28일) → 12일

↳ 시험법 변경으로 12일내 검사 가능

③ **법령 개정에 따른 검사 명칭 변경**

- 공중이용시설 검사 →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

④ **세분화 표기 :** "임상학적 세균검사"난을 삭제 후 **5종류로 세분화**

시험종별	처리기간	시험용검체소요량
레지오넬라균 검사	15일	1.대변 : 5g 이상 2.소변 : 10mL 이상 3.혈액(혈청) : 5mL 이상(1mL이상) 4.환경수계검체 : 1L 이상 5.조리식품 : 검체별 100g 이상 6.식품용수 : 1L 이상 7.호흡기검체 : 바이러스수송배지/무균용기
식중독균 검사	20일	
세포배양 관련 검사	30일	
결핵균 검사	12주	
기타 세균검사	10일	

⑤ **중복자료 통일** : 유통의약품 등 검사 → 의약품 등 검사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단속”을 “점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지도·단속”을 “지도·점검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시험결과의 표시)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로 광고하거나 용기·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(全文)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, “정부보증” 또는 “검정완료”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말소당한 자의 성명”을 “말소당한 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(제2조제1항 관련)

시 험 종 별	처리기간	시 험 용 검 체 소 요 량
식품류 검사	18일	1. 세균검사없는 항목 : 3개이상 (기본단위 : 개당 200g (mL)) 2. 세균검사있는 항목: 6개이상 (기본단위 : 개당 200g (mL)) 3. 용량검사있는 항목 : 추가 3개이상 (기본단위 : 개당 200g (mL))
식품첨가물검사	18일	1. 고체 : 200g 이상 2. 액체 : 500g (mL) 이상 3. 기체 : 1kg 이상
식품의기구·용기 및 포장류검사	18일	동일제품 6개 이상 (두루마리 형태 포장지는 3m이상)
농·축·수산물의 잔류농약검사	18일	1. 곡류 : 1kg 2. 채소류 및 과실류 : 3kg 3. 축산물 및 수산물 : 1kg
먹는물(샘물)검사	12일	1. 먹 는 물 : 4L이상 2. 먹는 샘물 : 5L이상
목욕수검사	7일	물 2L이상
수처리제	12일	중량 500g
대기·소음·진동·악취검사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검사	17일	출장조사
하천수, 호소수, 오하수 분뇨, 폐수검사	12일	1. 물 4L이상 2. 노말헥산, 페놀, 유기인계, 폴리 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항목 등 포함시 각 1L유리용기 별도채수
침출수검사	14일	

시 험 종 별	처 리 기 간	시 험 용 검 체 소 요 량
폐기물검사	10일	1. 액상(함량시험) : 3.5L이상 2. 고상,반고상(용출시험):600g이상 3. 유기인,테트라클로로에틸렌,트리클로로에틸렌 항목 등이 포함시 무색 경질유리 용기에 채취
유해화학 물질검사	15일	1. 포장단위 2개 이상 2.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검사결과 통지서 첨부
레지오넬라균 검사	15일	1.대변 : 5g 이상 2.소변 : 10mL 이상 3.혈액(혈청) : 5mL 이상 (1mL이상) 4.환경수계검체 : 1L 이상 5.조리식품 : 검체별 100g 이상 6.식품용수 : 1L 이상 7.호흡기검체 : 바이러스수송배지/무균용기
식중독균 검사	20일	
세포배양 관련 검사	30일	
결핵균 검사	12주	
기타 세균검사	10일	
토양오염도검사	20일	1. 토양유류시험 등 가. 토양 5g 채취 나. 메틸알코올 10mL 다. 30mL 용기 라. 0~4℃ 냉장상태 보관 운반 2. 토양시험용 시료 500g 이상
의약품등 검사	단일성분제제 30일 복합성분제제 55일	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등(화장품포함)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 별표 기준에 준함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수수료 감면)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산하기관 포함)가 그 기능 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검사·시험 등을 의뢰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. 부정식품 및 의약품 **단속**을 위한 경우 2. (생략) 3.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**지도·단속**을 위한 경우 4.~11. (생략)	제5조(수수료 감면)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산하기관 포함)가 그 기능 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검사·시험 등을 의뢰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. 부정식품 및 의약품 **점검**을 위한 경우 2. (현행과 같음) 3.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**지도·점검**을 위한 경우 4.~11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, 용기,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.	**제8조(시험결과의 표시)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이외로 광고하거나 용기·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(全文)을 기재하여야 한다.** **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"정부보증"또는 "검정완료"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된다.**
제9조(성적원본의 말소) ① (생략)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자의 **성명**과 말소이유,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	제9조(성적원본의 말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자의 **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.)**과 말소이유,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 (별표)

현 행			개 정 안		
의약품 등 검사	15일	1. 포장단위 2개 이상 2. 정제 100정 이상 3. 정제 500g 이상	<삭제>		
식품류 검사	18일	1. 세균검사없는 항목 : 3개이상 (기본단위 : 개당 200g (㎖)) 2. 세균검사있는 항목: 6개이상 (기본단위 : 개당 200g (㎖)) 3. 용량검사있는 항목 : 추가 3개이상 (기본단위 : 개당 200g (㎖))	식품류 검사	18일	1. 세균검사없는 항목 : 3개이상 (기본단위 : 개당 200g (mL)) 2. 세균검사있는 항목: 6개이상 (기본단위 : 개당 200g (mL)) 3. 용량검사있는 항목 : 추가 3개이상 (기본단위 : 개당 200g (mL))
식품첨가물 검사	18일	1. 고체 : 200g 이상 2. 액체 : 500g (㎖) 이상 3. 기체 : 1kg 이상	식품첨가물 검사	18일	1. 고체 : 200g 이상 2. 액체 : 500g (mL)이상 3. 기체 : 1kg 이상
식품의기구 · 용기 및 포장류검사	18일	동일제품 6개 이상 (두루마리 형태 포장지는 3M이상)	식품의기구 · 용기 및 포장류검사	18일	동일제품 6개 이상 (두루마리 형태 포장지는 3m이상)
먹는물 (샘물)검사	12일 (여니시아균검사 28일)	1.먹 는 물 : 4ℓ이상 2.먹는샘물 : 5ℓ이상	먹는물(샘물) 검사	12일	1.먹 는 물 : 4L이상 2.먹는샘물 : 5L이상
목욕수검사	7일	물 2ℓ이상	목욕수검사	7일	물 2L이상
대기·소음·진동·악취검사 및 **공중이용시설 검사**	17일	출장조사	대기·소음·진동·악취검사 및 **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**	17일	출장조사
하천수, 호소수, 오하수·분뇨, 폐수검사	12일	1. 물 4ℓ이상 2. 노말헥산, 페놀, 유기인계,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항목등 포함시 각 1ℓ유리용기 별도채수	하천수, 호소수, 오하수·분뇨, 폐수검사	12일	1. 물 4L이상 2. 노말헥산, 페놀, 유기인계,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항목 등 포함시 각 1L유리용기 별도채수
침출수검사	14일		침출수검사	14일	

신 · 구조문 대비표 (별표)

현 행			개 정 안		
폐기물검사	10일	1. 액상(함유량시험) : 3.5 ℓ 이상 2. 고상,반고상(용출시험):600g이상 3. 유기인,테트라클로르에틸렌,트리클로로에틸렌 항목 등이 포함시 무색 경질유리 요기에 채취	폐기물검사	10일	1. 액상(함량시험) : 3.5L이상 2. 고상,반고상(용출시험):600g이상 3. 유기인,테트라클로로에틸렌,트리클로로에틸렌 항목 등이 포함시 무색 경질유리 용기에 채취
토양오염도검사	20일	1. 토양유류시험 등 가. 토양 5g 채취 나. 메틸알코올 10㎖ 다. 30㎖ 용기 라. 0~4℃ 냉장상태 보관 운반 2. 토양시험용시료 500g 이상	토양오염도검사	20일	1. 토양유류시험 등 가. 토양 5g 채취 나. 메틸알코올 10mL 다. 30mL 용기 라. 0~4℃ 냉장상태 보관 운반 2. 토양시험용시료 500g 이상
임상학적 세균검사	10일	1. 약 물 : 20cc이상 2. 포 장 : 10개 이상 3. 식중독 : 500g이상 4. 대 변 : 20g이상 5. 소 변 : 10cc이상 6. 혈 액 : 5cc	레지오넬라균 검사	15일	1.대변 : 5g 이상 2.소변 : 10mL 이상 3.혈액(혈청) : 5mL이상 (1mL이상) 4.환경수계검체 : 1L이상 5.조리식품 : 검체별 100g 이상 6.식품용수 : 1L이상 7.호흡기검체 : 바이러스수송배지/무균용기
			식중독균 검사	20일	
			세포배양 관련 검사	30일	
			결핵균 검사	12주	
			기타 세균검사	10일	
유통 의약품 등 검사	단일성분제제 30일 복합성분제제 55일	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등(화장품포함)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 별표 기준에 준함.	**의약품 등 검사**	단일성분제제 30일 복합성분제제 55일	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등(화장품포함)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 별표 기준에 준함.

관계법령 발췌

【보건환경연구원법】

제5조(업무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의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안의 보건·환경관련기관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

제12조(처리기간의 설정·공표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접수기관·경유기관·협의기관(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 및 처분기관 등 각 처리단계별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관계법령 등에 명시하고,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수록하여야 한다.